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4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27.
3. 회부연월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u>국가회계위원회</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상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회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회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현재 회계 정책, 표준 제정, 감독 기능이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주무관청의 회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분야의 총괄 기구로서 국가회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계획 심의·의결,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승인 및 수정 요구, 감사보고서 감리 등 회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본 개정안과 연계하여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46호)¹⁾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그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 회계기본법안 주요내용 >

- (제2장) 국가회계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구성)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9명 위원
 - ▲(기능)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조치, 법령·제도개선 요청
- (제3장) 회계정보의 작성원칙, (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은 위원회의 사전승인 필요
- (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
 - ▲ 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위탁 가능 ▲ 회계감독원 설립
- (제7장) 기반 조성
 - ▲ 회계교육 강화 ▲ 회계 전문인력 양성 ▲ 회계 연구기관 육성 등

현재, 민간 법인등에 대하여 회계정책·회계처리기준·감독은 각 대
상별로 금융위원회(기업), 재정경제부(공공기관), 교육부(사립학교), 보

1) 당초 발의된 「회계기본법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353호)은 철회되었고, 이후 내용이 일부 보완되어 같은 제명으로 2026.2.25.에 재발의(의안번호 17046호)됨.

건복지부(의료기관) 등 각 주무부처별로 분산하여 담당하는 체제이고, 관련 전문기관²⁾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회계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회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회계기본법안」에서 신설하려는 국가회계위원회는 민간 법인등의 회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회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의 회계처리로, 이와 관계되는 기본사항은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조직 명칭에 ‘국가회계’로 포함하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회계정책·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문제는 해당 기능의 통합 수행의 필요성, 기존 부처와의 기능 중복 여부, 정부조직의 비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예)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사·감독, 기업·회계법인 감리, 금융위원회 업무지원 등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정책·제도 연구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회계 감리, 회계 관련 연구·교육 등

문 의 처
02)6788-5339